

본인확인	담당	책임자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비여신 금융거래)

(주)하나은행 귀중

귀 행과의 비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본 동의서는 비여신(금융)거래(수신, 내 · 외국환, 전자금융, 현금카드, 신탁, 퇴직연금, 펀드, 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대여금고, 보호예수, 각종 대행업무 등)와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이용하기 위하여 1회만 작성하는 동의서로, 본 동의 이후 비여신(금융)거래 시 별도의 동의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필수정보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집 · 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 · 이용할 항목	<p>[필수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정보 : 성명, 고유식별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 금융거래정보 :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내역정보 및 (금융)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고객ID, 접속일시, IP주소, 이용전화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정보 [전자금융거래에 한함] <p>※ 본 동의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p>
보유 · 이용 기간	<p>보유 · 이용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 · 이용됩니다.</p> <p>*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행과 거래증인 모든 계약(여 · 수신, 내 · 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한 날을 뜻합니다.</p>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p>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p>
수집 · 이용 동의여부	<p>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p>
고유식별정보 동의여부	<p>귀 행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p>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부: _____, 모: _____ 는 위 본인의 법정대리인으로 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금융)거래를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법정대리인: _____ (부, 모) 서명 또는 (인) _____



통장대여요청 여부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요청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를 요청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통장양도금지 확인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부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에 따라 계좌개설 등의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불법재산의 온닉, 자금세탁행위, 공증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통장 실소유자 여부

명의인과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비대면 거래이용이 제한됩니다. 실 소유자와 명의인이 같습니다.

대한민국 이외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 보유 여부

미국거주자(시민권자, 이중국적자, 영주권자, 미국세법상거주자) 또는 미국 외 해외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정보 취급방침

하나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2 (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 | |
|----------------------|-----------------------|---|
|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 2.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 3. 개인정보의 분리 보관 |
| 4. 개인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 5. 이용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의 삭제 |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개인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 | | |
|---------------|---------------|-------------------|--|
|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 ·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 개인정보의 제공처

하나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하나금융지주,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하나생명보험,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하나에프앤아이, 핀크입니다.

III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 · 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개인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개인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관리인등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개인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개인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 · 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그룹사간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고객의 조회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⑧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고, 개인정보의 송 · 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 · 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개인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개인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하나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 KEB하나은행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금융투자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카드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자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 하나에프앤아이	고객정보관리인	• 핀크	고객정보관리인				



예금자보호 설명 및 확인

본인이 가입하는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여부 및 보호한도(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거래 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 2 조 실명거래

-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전화기 등(이하 “전산통신기기”)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다.

제 4 조 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전산통신기기이용약정 등에 따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 5 조 인감, 비밀번호 등의 신고

- ①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지급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신고할 수 있다.

제 6 조 입 금

-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 3 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거래처의 신청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할 수 있다.
-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 7 조 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 6 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 1 항제 3 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③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 1 항 및 제 2 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증권의 부도

①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그 권리보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이 지급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 9 조 이 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간 또는 제 7 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내용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시하며, 또한 변동 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 1 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본다.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2.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지급·해지청구

-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11 조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 ① 은행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공동협약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 ② 제 1 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 ③ 제 1 항의 지급정지기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 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송달이 지연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정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10 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은행이 제 1 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이의신청절차를 유선 또는 이와 상응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은행이 정한 민원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⑤ 거래처가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 ⑥ 은행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경우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 ⑦ 은행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기관에 이체된 경우 사고발생을 인지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 1 항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 조 지급시기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 13 조 양도 및 질권설정

-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려면 사전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설정할 수 없다.

제 14 조 사고·변경사항의 신고

-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신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없이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 1 항의 신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 14 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신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 16 조 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 14 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 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정보의 형태로 제시된 어음·수표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신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련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전환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 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 14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제 18 조 수수료

- ① 거래처가 개설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전산통신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 ② 은행은 제 1 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 1 항, 제 2 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 19 조 오류처리 등

-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친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 20 조 예금의 비밀보장

-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전산통신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예금잔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 1 항에 의한 게시
 2. 2 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신고한 전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 ③ 거래처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고지후 변경약관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2 조 약관적용의 순서

-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을 먼저 적용한다.

제 23 조 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 24 조 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제1조 적용범위

-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이자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으며, 은행에서 정하는 예금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수 있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저축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 금요일**
 3.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 금요일**
- ② 제①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 ③ 예금의 이자는 제1항에 따른 이자지급을 제외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까지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지급하고,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를 원금에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거래증지계좌

은행은 이 예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거래증지계좌로 따로 관리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은행 창구에서 서면으로 신청한 때에는 은행은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후 거래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예금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4조 은행제공 수표 .어음용지에 의한 거래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 ① 거래처는 은행이 내어준 수표.어음용지로 거래하여야 하며, **1,000만원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경우 발행내역(발행일, 지급기일,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관련 네트워크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 ①항의 용지는 거래처가 요청할 때 은행이 내어준다. 다만, 거래처가 요청한 양이 많다고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거래제한

- ① 가계당좌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 1계좌에 한한다.
- ② 거래처는 제4조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가계수표용지에 인쇄된 발행한도금액 이내로 발행하여야 하며 은행은 발행한도를 넘는 수표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거래처가 은행(다른 은행 포함)과 직접 거래할 때에는 발행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③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통장 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 수표.어음금 지급 및 지급위탁 취소

- ① 은행은 제4조 제①항에 따라 내어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거래처에서 지급위탁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한다.
-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한다. 다만, 수표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다
- ③ 거래처가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은행이 마련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고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라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특례

제6조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래처가 은행에 이행하여야 할 다음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수표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예금에서 지급하거나 대체 결제할 수 있다.

1. 각종 이자,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 원금, 수출어음 부도대전
3. 어음교환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4.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상환영수증으로 청구 받은 금액

제8조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같은 날 거래처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채무이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은행은 거래처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한다.

제9조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 ① 은행은 당좌예금 · 가계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②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①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어음 · 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한다.

1.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2.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 · 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예금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4. "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 ② 제①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거래처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대리인과의 거래

- ①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은행은 제①항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 「신용정보 관리규약」상 신용거래 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거래처가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거래처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거절할 수 있다.

제12조 당좌.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 ① 은행은 거래처가 관련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은행은 거래처가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기준에 의해 신용거래 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당좌, 가계당좌예금 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한다.

제13조 당좌.가계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제시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거래처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좌예금 거래보증금

- ① 거래처는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
- ② 은행이 제①항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거래처가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거래처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거래처에게 돌려 준다.
- ③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①항의 보증금을 거래처가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한다.
- ④ 은행은 제③항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준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 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 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준다.
- ⑤ 제④항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수표나 어음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준다.

부칙 (2016.12.30. 개정)

제1조(시행일) 제2조 3항을 신설하는 개정약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제3항의 최종거래일이 이 약관 시행일보다 전일자인 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의 최종거래일은 이 약관의 시행일로 본다.

『e-플러스 통장』 특약

제1조 약관의 적용

e-플러스 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으로 합니다.

제3조 가입대상 및 제한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

제4조 이자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과목의 개별상품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

제5조 가입 및 전환 방법

이 예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 ②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콜센터를 이용하여 이 예금으로 전환.

제6조 거래방법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거래방법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제7조 통장발급

-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②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제8조 우대금리

이 예금은 신규 또는 전환시 고시된 우대금리를 개별상품의 금리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e-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시 e-플러스 통장의 우대 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제9조 우대금리 변경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은행이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 시행일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게시합니다.

『e-플러스 통장』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돋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e-플러스 통장 특약』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장 또는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e-플러스 통장』
- 상품특징: 온라인 전용 통장으로 기본금리에 더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하는 상품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 또는 증서에 따릅니다.

(2017.08.10. 현재, 세전, 연)

구 분	내 용
가 입 대 상	실명의 개인
예 금 종 류	보통예금, 저축예금
가 입 한 도	제한없음
이자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과목의 개별상품 고시금리를 적용합니다.
기본금리	보통예금, 저축예금의 고시금리
우 대 금 리	연 0.5% 우대 단,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e-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시 e-플러스 통장의 우대 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입 및 전환 방법	① 영업점에서 예금주의 요청에 의해 신규 가입 및 전환 ②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 ③ 예금주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콜센터를 이용하여 전환
거래방법	이 예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거래방법은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포함), 폰뱅킹 및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에 한합니다.
통 장 발 급	① 이 예금은 통장을 발급하지 않으며, 전환된 계좌는 이전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예금주가 이 예금의 통장발급을 요청할 경우 은행은 요청일 당시 고시된 수수료를 부과 후 통장을 발급합니다.
세 제 혜 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계약의 해지	영업점에서 해지 가능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3

유의사항

- 은행거래 실적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을 e-플러스 통장으로 전환 시 e-플러스 통장의 우대 금리는 제공되지 않고 최초 상품의 우대금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KEB 하나은행 리테일 사업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자세한 상품문의는 콜센터 1599-1111 (서비스코드: 예금상담 012)로 연락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의문사항 또는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kebhana.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 · 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 별로 당행에 제공 · 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 · 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접수 : 당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 전화접수 : 당행 콜센터 ☎ 1599-1111, 080-892-1111
- 서면접수 : 당행 전 영업점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 · 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한국신용정보원(민원서비스팀), 금융감독원(금융민원실)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행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개인정보보호 책임자: (02) 3709-6455, 729-0735, 서울 종구 을지로 66
- 한국신용정보원 민원서비스팀: 1544-1040, 서울시 종구 명동11길 20(명동 1가)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 133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kebhana.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연락중지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증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 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신용정보 이용 · 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 · 제공한 경우 매 1년마다 이용 · 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 신용정보 이용 · 제공사실 통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당행과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NICE 지키미,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NICE 지키미(나이스평가정보) : 02) 1588-2486 / www.credit.co.kr
- 사이렌24(서울신용평가정보) : 02) 1577-1006 / www.siren24.com
- 올크레딧(코리아크레딧뷰로) : 02) 708-1000 / www.allcredit.co.kr

4.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KEB하나은행 Finnq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용)

(주)하나은행 귀중

귀 행의 KEB하나은행 Finnq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 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의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항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주)핀크**
- 제공할 항목 : Finnq 앱에서 KEB하나은행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해 개설한 계좌의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Finnq 앱 내 계좌 자동등록**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 Finnq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계좌관련 서비스 종료일까지 보유·이용하며 해당 기간 종료 시 즉시 파기합니다. 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률 및 내규에 의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는 KEB하나은행 비대면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여부

귀 행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휴대폰인증 이용약관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본인은 NICE 평가정보(주)(이하 '회사'라 함)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 유플러스(주) 등 통신사 또는 통신사와 도매제공협정을 체결한 알뜰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취급위탁 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가.본인(서비스 이용자 포함)이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 나.휴대폰 소지 확인을 위한 SMS(또는 LMS) 인증번호 전송
- 다.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및 서비스 관련 상담 처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가.개인의 성명, 성별·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이동통신사
- 나.연계정보(Cl), 중복확인정보(DI)
- 다.본인(서비스 이용자 포함)이 이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Application 정보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취급위탁

- 가.제공항목 : 수집한 개인정보 항목
- 나.제공받는 자(수탁자) :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 유플러스, 삼성 SDS, 드림시큐리티, 모빌리언스, SK 네트웍스, 케이스카이비, 다날, 통신사와 도매제공협정을 체결한 알뜰폰사업자
- 다.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취급위탁 업무) :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본인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기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 가.회사 내부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본인확인 발생 및 차단기록, 휴대폰번호
 - 보유 이유: 부정 이용 방지 및 민원 처리
 - 보유 기간: 5년
- 나.관계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이용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보유 이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보유 기간: 3년
5.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

본인은 NICE 평가정보(주)(이하 '회사'라 함)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 유플러스(주) 등 통신사 또는 통신사와 도매제공협정을 체결한 알뜰폰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제공하는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와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LG 유플러스(주) 등 통신사 또는 통신사와 도매제공협정을 체결한 알뜰폰사업자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NICE 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연계정보(D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및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계정보(DI)/중복가입확인정보(DI) 생성 후 즉시 폐기
5. 본인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NICE 평가정보(주) (이하 "회사"라 한다)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 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을 이용하여,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및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와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 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 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연계정보" 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제 5 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한 의견,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거나 처리에 관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 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 6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하여서는 안되며, 접근 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내용)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이 가능한 인증 서비스입니다.
2.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 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컨텐츠 요청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 후,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 해당 휴대폰번호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가 발송되며, 수신된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제 8 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 9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서비스" 계약종료 등과 같은 "인터넷사업자"의 제반 사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서비스"의 변경, 중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위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회사"측의 중과실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4 조 (회사와 인터넷사업자와의 관계)

- "회사"는 "인터넷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와 "인터넷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인터넷사업자"와 "이용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면책)

-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이용자" 또는 제 3 자 측의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만료 또는 요금 미납의 결과로 사용자계정이 정지되거나, 보관 파일이 삭제된 후 이에 따르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6 조 (관할 법원)

-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제 1 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등,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4-1. SK 텔레콤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 (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에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관한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여부와 본인이 등록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의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여부, 본인명의로 개통된 이동전화번호, 기타 '회사'와 '이용자'간에 별도로 설정한 번호 등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자와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중 '회사'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이트'에서 특정 서비스 이용, 구매 등 어떤 행동을 할 때, 해당 '이용자'의 기 가입/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5.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고,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합니다)을 개발?제공?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6. '연계 식별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가입/등록한 '사이트'들간의 서비스 또는 Contents, point 등의 연계, 정산 등의 목적으로 '사이트'에 가입/등록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생성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7. '대행기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와 '회사'간의 '본인확인서비스'를 중계하고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방법의 안내와 문의 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등, '회사'가 위탁한 업무범위내에서 '회사'를 대신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8. '사이트'라 함은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스마트폰 Application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상품, 서비스, Contents, Point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을 유/무료로 제공하는 개인, 법인, 기관, 단체 등을 말합니다.
9. '접근매체'란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위해 '이용자' 및 '이용자'가 입력하는 내용 등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제 2 항의 정보, I-PIN ID 및 Password 등 '본인확인기관'에서 발급받은 정보, 기타 '이용자'가 '회사' 및 '사이트'에서 설정한 ID 및 Password 등의 정보, '이용자' 명의의 이동전화 번호 등을 말합니다.
10. '대체수단'이라 함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식별정보를 포함하여, 주민등록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여부를 식별 및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합니다.

11. '부가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본인확인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보안?인증절차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여, 유료인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해 '회사'의 이동전화서비스 청구서에 합산하여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이동전화 요금과 함께 수납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을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등에 게시하거나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하여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약관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2.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적용일자 15 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3. '회사'가 전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 적용일 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약관 변경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자'가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 또는 '사이트'가 이 약관의 내용(약관 변경시 변경된 내용 포함)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자'가 '사이트' 등에 게시되거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공개되는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 버튼을 누르거나 체크하면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5 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 '이용자'가 사용한 '접근매체'와 입력된 본인확인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본인확인서비스'를 요청한 내역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 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본인확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4.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등 또는 본인확인정보 유출 등의 사실을 인지할 경우 '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자'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즉시 '본인확인서비스'를 중지합니다.

제 6 조 ('본인확인서비스' 안내)

1.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는, '이용자'가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에 대해, '이용자'가 본인 명의로 개통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 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의 성년?미성년 여부, 중복가입여부 등을 확인하여주는 서비스입니다. 단,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사'에 취급을 위탁한 정보만을 기반으로 본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사이트'에, 서비스 화면 또는 Socket 형태로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트'는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사이트'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서비스' 이용 수단을 제공합니다.
3. '이용자'는 특정 '사이트'에서 '회사' 및 '대행기관'의 이용약관, '사이트'의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제 3 항에 따라 각 이용약관에 동의한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본인 명의로 가입한 이동통신사와 이동전화 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입력한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로 송신되는 1회성 암호(승인암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단,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사이트'에서는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제 4 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완료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 식별정보'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사이트'의 요청에 따라 '사이트'에 제공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각 '사이트'가 '이용자'와 체결한 약관,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폐기됩니다.

제 7 조('본인확인서비스'의 '부가서비스')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강화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유료 또는 무료로 제공합니다.
2.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상세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조건은 서비스별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1. 휴대폰 인증보호 서비스 (월 1 천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 8 조 ('대체수단'의 생성 및 제공)

1. '회사'는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대체수단'을 생성하고 '사이트'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대체수단' 생성 및 제공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용자'의 이동전화 가입시, 제 3 의 '본인확인기관'에 실명 사용여부를 질의하고, 이에 따라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저장하는 방법
 2.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제 3 의 '본인확인기관'간의 합의를 통하여 비밀번호 등 '대체수단' 규격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회사'가 생성하거나 제 3 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방법
 3.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해당 '이용자'의 이동전화가입시 '회사'가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와 해당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 '사이트'의 일련번호를 제 3 의 '본인확인기관'에 제공하고, 이에 해당되는 '대체수단'을 받아와서 제공하는 방법
3.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회사'가 제 3 의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을 제공받은 경우, 해당 '대체수단'의 정확성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시간)

1. '본인확인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 기타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에 일시 중지될 수 있으며, 각 '사이트'의 기술상, 운영상의 사유와 목적에 따라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중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별도의 보상은 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기간에 따라 정액제 형태로 유료 판매하는 경우, 정액제 유료 '이용자'에게는 중지시간이 24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월 이용금액을 해당월의 날짜 수로 일할 계산하여 환불 또는 차감하며, 이용금액의 과금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가, '대행기관'인 경우에는 '대행기관'이 환불 또는 차감하여 드립니다.

제 10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누설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이용자'가 제 5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접근매체' 또는 본인확인정보의 이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시스템이나 절차, 기능 등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본인확인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5.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휴대폰 소액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용자' 또는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것은 물론,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및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6.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거나 일부 특수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이용자'가 '회사'의 이동전화 등 통신역무 이용을 위해 제출한 가입신청서 또는 이와 관련된 본인확인 절차가,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등 위법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이용자' 및 회선에 대한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이용자'와 회선에 대해 관련 법령 및 통신역무 이용약관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절차 미비, 명의도용, 관련 서류 위?변조, 본인확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1.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이용자'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 및 '대행기관', '사이트'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법령에 규정하는 제반 범죄 및 위법 행위
 4. 이 약관에 규정된 '이용자'의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제 5 조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 정보의 제공 범위)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 3 자가, '이용자'의 이동전화 번호 및 해당 '사이트'?신용카드사 등 제 3 자가 보유한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회사'에 대해 확인할 경우, '회사'는 해당 이동전화 번호 및 '대체수단'의 진실성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이트' 또는 신용카드사 등 제 3 자에게 회신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킹방지시스템 및 보안관리 체계 구성, 접근제한 등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2.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 관련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춥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 차단 및 탐지시스템 설치
 2.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방어, 탐색, 복구 절차를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1.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회사'가 관련 법령과 '회사'가 수립하여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 등에 따릅니다. 자세한 '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회사' 대표 '사이트'(www.sktelecom.com)에서 제공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자'중 '회사'의 이동전화망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입자가 속한 개별 별정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및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법적 절차 준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가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은 개별 별정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제 1 항과 제 2 항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서 정한 바 이외에, '회사'는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 개인정보의 일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시 '사이트'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의 생성 및 관리,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를 제 3 의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집 또는 제공받은 개인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대체수단')는 '회사'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사이트'에게 제공합니다.'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3. '본인확인서비스'를 위한 '회사'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범위 및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수탁자와 위탁업무내용 등은 이 약관이 게시되는 화면에 별도로 링크하여 제공합니다.

제 15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16 조 (관할법원)

1. '본인확인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합니다.
2. 제 1 항의 협의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지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4-2. KT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번호 대체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회사 또는 인증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인증대행 기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3.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4. "중복가입확인정보"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5. "연계정보"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6.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7. "인증 대행기관"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8.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기관과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9. "접근매체"라 함은 본인확인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본인확인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 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 사항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회사의 전항 단서에 따른 약관의 불리한 변경에 대하여 적용예정일까지 회사에게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 3 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4.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제 5 조 (서비스 안내)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없이, 본인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휴대폰인증 서비스입니다.
2. 회사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 찾기, 성인인증, 기타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하며, 입력한 정보가 일치한 경우에는 해당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4. 본인 인증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는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 · 운영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시간)

1.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 일 24 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및 기타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도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정 범위로 분할 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 합니다.

제 7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시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접근매체를 통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지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자체 없이 수리 및 복구합니다.
4.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가. 다른 사람의 명의사용 등 이용자 등록 시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
 2. 나. 이용자 등록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기하여 신청하는 경우
 3. 다. 대포폰(이동전화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불법대출 등 부정사용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 무단 개통 또는 명의자를 교사하여 개통하는 휴대전화)을 이용하는 경우
 4. 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명의 도용을 이유로 처벌받은 경우
 5. 마. 불법 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 받은 경우
 6. 바. 기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5.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본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본 서비스의 중단(회사 또는 운영자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디스크 장애, 시스템 다운 등)으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나. 서비스를 위한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3. 다. 서비스 업그레이드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라.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마. 회원이 회사의 본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6. 바. 기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저작권, 제 3 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4.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본인확인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처리)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따라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타 본인확인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타 관련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4-3. LG U+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민번호를 대체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제공하는 LG 유플러스(이하 "회사")와 이용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이용조건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리)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상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임을 안전하게 식별 및 확인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자신의 본인확인정보를 회사, 인증대행사 및 타 본인확인기관 등에게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본인확인정보"라 함은 이용자가 입력한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 본인 식별에 필요한 이용자의 정보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모바일 통신 단말기(피쳐폰, 스마트폰)를 지칭한다.
- "중복가입확인정보(DI)"라 함은 웹사이트에 가입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중복확인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연계정보(Cl)"라 함은 인터넷사업자의 온 · 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의 목적으로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 "인증대행사"이라 함은 회사를 대신하여 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 등의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사와 업무지원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어 인터넷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9. “인터넷사업자”라 함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자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와의 서비스 계약을 통해 운영하며, 인터넷 웹사이트의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정보를 제공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사 홈페이지(www.uplus.co.kr)에 게시하여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변경된 내용의 시행 15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손해 및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4 조 (접근매체의 관리 등)

1.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 5 조 (서비스 이용방법)

1. 서비스는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생년월일과 본인 명의로 된 휴대폰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휴대폰인증 서비스입니다.
2. 회사는 인증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사업자는 회원가입, ID/PW 찾기, 성인인증 등 이용자의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3. 제2항의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생년월일, 성명, 성별, 내/외국인, 휴대폰번호, 통신사 등의 정보를 입력한 후 입력한 정보가 이용자 본인의 정보와 일치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수신된 1회성 비밀번호(이하 “승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본인 식별 또는 본인 확인이 이루어 집니다.
4. 제3항과 같이 본인확인이 완료 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본인확인정보와 중복가입확인정보 및 연계정보가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인터넷사업자가 중복가입확인정보 또는 연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 관리 및 컨텐츠를 제공 운영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시간)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고,

서비스 설비 정기 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공지한 후 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회사의 권리와 의무)

1.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가 아닌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약관이나 안내사항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이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손해 등 이용자의 부주의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3.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지한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는 경우 등 기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의 예방점검, 유지보수 등을 이행하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자체없이 서비스를 복구합니다.
6. 회사는 복제폰, 대포폰, 불법 휴대폰 대출(일명 휴대폰깡) 등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행위로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통지 없이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회사는 위반 행위에 따르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타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 및 승인번호를 부정하게 사용 및 도용하는 행위
 2. 회사 또는 제 3 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범죄 행위 및 범죄적 행위와 관련있는 행위
 4.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5.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2.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에 대한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9 조 (본인인증 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1. 회사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지침의 제정 및 시행, 정보 처리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관리 등의 관리적 조치와 모니터링 체계 및 해킹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버 및 통신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보처리시스템 자원 상태의 감시, 경고 및 제어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회사”는 해킹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1.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2. 침입탐지시스템 설치
 3. 그 밖에 필요한 보호장비 또는 암호프로그램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4. “회사”는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대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응용프로그램은 사용을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컴퓨터바이러스 검색프로그램으로 진단 및 치료 후 사용할 것
 2. 컴퓨터바이러스 검색, 치료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최신 버전을 유지할 것
 3.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하여 방어, 탐색 및 복구 절차를 마련할 것

제 11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2 조 (개인정보의 처리)

1.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된 본인확인정보의 취급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스스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아래 표와 같이 회사가 선정한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서울신용평가정보(주)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본인확인 업무대행
한국모바일인증(주)	본인확인 업무대행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본인확인정보의 처리
	본인확인 업무대행
NICE 평가정보(주)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다날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한국사이버결제	본인확인 업무대행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주)인포허브	본인확인 업무대행
(주)드림시큐리티	본인확인 업무대행
KG 모빌리언스	본인확인 업무대행
LG U+	본인확인 업무대행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시 인터넷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이용자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의 생성 및 제공을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다른 본인확인기관에게 본인확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수집된 식별정보(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는 본인 식별 및 확인 위한 목적으로 회사 또는 인증 대행사를 통해 인터넷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정보
서울신용평가정보(주)	휴대폰 본인확인(이용 고객에 한함) 서비스 이용 ※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의 생성 및 제공	주민등록번호
코리아크레딧뷰로(주)	휴대폰 본인확인(이용 고객에 한함) 서비스 이용 ※ 중복가입확인정보(DI), 연계정보(CI)의 생성 및 제공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 처리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회사가 정하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